

# 노무 자문 협약서

위임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수임인: 노무법인 랜드마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이 노무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디자인재단의 노무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자문을 구하고, 노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아 서울디자인재단의 노무에 관한 업무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이 노무법인 랜드마크를 자문법인으로 선임하고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신의로써 성실하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자문에 응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필요로 하는 노무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업무범위】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업무범위는 노사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질의, 노사관계 분쟁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복리후생업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유선, 방문지도, 서면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위임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019.1.1 부터 2019.12.31 까지 한다.

제5조 【자료제공 및 답변방법】 ①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서류 등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한다.

②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에게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요청한 시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다.

제6조 【보수】 ①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및 이와 관련하여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페이지 무관)에 대한 보수는 월 사십만원(₩ 4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용역보수를 매월(협약체결일 응당일) 서울디자인재단에게 청구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청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지정하는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은행계좌에 송금한다.

제7조 【일반적인 자문 이외의 용역】 서울디자인재단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 자문 이외의 특별 용역을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지득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제 비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해 지】 서울디자인재단은 본 협약기간 중 자문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사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노무법인 랜드마크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합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①서울디자인재단과 노무법인 랜드마크 간에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계에 따른다.

② 본 협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5일

위임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종로6가)  
대표이사 최 경 란 (印)

수임인(노무법인 랜드마크) 노무법인 랜드마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 2차 2105호  
대표노무사 김 수 희 (印)

# 노무 자문 협약서

위임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수임인: 노무법인 랜드마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이 노무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디자인재단의 노무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자문을 구하고, 노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아 서울디자인재단의 노무에 관한 업무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이 노무법인 랜드마크를 자문법인으로 선임하고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신의로써 성실하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자문에 응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필요로 하는 노무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업무범위】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업무범위는 노사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질의, 노사관계 분쟁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복리후생업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유선, 방문지도, 서면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위임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019.1.1 부터 2019.12.31 까지 한다.

제5조 【자료제공 및 답변방법】 ①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서류 등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한다.

②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에게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요청한 시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다.

제6조 【보수】 ①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및 이와 관련하여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페이지 무관)에 대한 보수는 월 사십만원(₩ 4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용역보수를 매월(협약체결일 상당일) 서울디자인재단에게 청구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은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청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지정하는 노무법인 랜드마크의 은행계좌에 송금한다.

제7조 【일반적인 자문 이외의 용역】 서울디자인재단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 자문 이외의 특별 용역을 노무법인 랜드마크가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노무법인 랜드마크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지득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제 비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해 지】 서울디자인재단은 본 협약기간 중 자문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사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노무법인 랜드마크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합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①서울디자인재단과 노무법인 랜드마크 간에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5일

위임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종로6가)  
대표이사 최 경 란 (印)

수임인(노무법인 랜드마크) 노무법인 랜드마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 2차 2105호  
대표노무사 김 수 희 (印)